



교육감 규정

번호: A-663

제목: 학부모 대상 언어 지원

항목: 학생

발행: 2025년 6월 20일

변경 사항 개요

본 규정은 2009년 06월 26일자 교육감 규정 A-663을 대체합니다.

이 규정서의 목적은 영어 외 언어로 의사교환을 하는 학부모를 포함한 뉴욕시공립학교 등록 학생들의 학부모가 자녀 교육에 중요한 의미 있는 참여 기회를 얻고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확실히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요약한 것입니다. 이 규정서의 일부가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구성되었으며 최신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링크를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이 규정서는 또한 학부모 대상 제공 가능한 언어 지원의 전체 범위를 반영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규정의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 내용:

섹션 I. 정의

- 주요 용어의 정의 추가: 교육청(DOE), 학교, 학부모, 영어 구사력이 제한적인 학부모, 비상시 연락 카드, 언어 지원실, 언어 지원 코디네이터 및 학부모 대응 교직원.
- 통역 및 번역을 포함한 주요 용어의 정의 업데이트.
- 오래된 용어 정의를 폐기.
- 교육청의 분류에 따른 영어 외 학부모 선호 언어인 지원 언어(Covered Languages)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12개 언어로 확대.

섹션 II. 선호하는 의사소통 언어 결정:

- 현재 관행을 고려하여 "주요 언어"를 "선호 언어"로 대체.
- 학교에서 각 학부모의 선호 언어 기록을 관리하는 요건 및 이런 정보의 유지 방법을 명확히 함.
- 학생 기록 또는 법원 명령 관련 뉴욕주 또는 연방 법에서 금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부모 선호 언어 정보를 학부모를 응대하는 직원이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

섹션 III. 언어 지원 서비스 제공 의무

- 이 부분을 수정 및 재구성하여 내용을 명확히 함.

- 번역 및 통역 서비스 제공 요건을 명확히 규정.
-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정의.

섹션 IV. 본 규정 요건 이상의 언어 지원 서비스

- 교육청에서 이 규정서 요건 이상의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밝힘.

섹션 V. 언어 지원 코디네이터로 학교 직원 지명

- 각 학교장은 학교 내 언어 지원 서비스 지원 책임을 맡을 언어 지원 코디네이터를 지명하는 것이 필수임과 이 직책의 책임을 추가.

섹션 VI. 학교 기반 언어 번역 및 통역(Language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LTI) 계획

- LTI 계획의 명칭 및 이 계획에 항목의 목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업데이트.
- 교육청에서 각 학교의 계획을 검토할 것임을 추가.

섹션 VII. 연수

- 모든 학부모 응대 직원이 필수로 언어 지원 연수를 받아야 함을 추가.
- LAC를 위한 추가 연수 제공.

섹션 VIII. 학부모가 언어 지원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 학부모가 언어 지원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을 명확히 함.
- 언어 지원 서비스 요청을 위한 연락 정보 업데이트.

섹션 IX. 학부모 통보

- 언어 지원 서비스 요청 및 의견을 제공하는 방법 또는 이런 서비스에 관한 불평을 제출하는 방법을 포함한 언어 지원 서비스의 제공관련 정보를 학부모에게 제공할 학교의 책임을 명확히 함.

섹션 X. 기록 보관

- 기록 보관 요건을 명확히 함.

섹션 XI. 문의

- 질문을 제출할 관련 연락처의 최신 정보 업데이트.



교육감 규정

번호: A-663

제목: 학부모 대상 언어 지원

항목: 학생

발행: 2025년 6월 20일

요약

본 규정은 2009년 06월 26일자 교육감 규정 A-663을 대체합니다. 본 규정은 영어 외 언어로 의사교환을 하는 학부모를 포함한 뉴욕시공립학교 등록 학생들의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중요한 의미 있는 참여 기회를 얻고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확실히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확립합니다.

I. 정의

본 규정에서는 각종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A. 지원 언어(Covered Languages)는 교육청의 분류에 따라 영어 외 열 두개의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학부모 선호 언어를 의미하며 신규 지원 언어는 본 규정 발행 이후 시행될 것입니다.¹
- B. 교육청(DOE)은 뉴욕시 교육청을 의미합니다.
- C. 비상 연락 카드는 학부모가 매년 제출하는 양식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비상 연락처와 학부모 선호 언어 정보가 포함됩니다.
- D. 통역은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구두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동등하게 음성 변환하여 원래 메시지의 의미, 어조,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 E. 언어 지원 코디네이터(LAC)는 학교 내 언어 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책임이 있는 지정된 학교 직원을 의미합니다.
- F. 언어 지원 서비스는 LEP 학부모 대상의 번역 및/또는 통역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G. 제한된 영어 구사력(LEP) 학부모는 영어를 가정 언어로 사용하지 않고/또는 영어를 읽고, 말하고, 쓰고, 이해하는 능력이 제한적이고/또는 영어 외의 언어로 의사소통 하는 것을 선호하는 학부모를 의미합니다.

¹ 2009년 6월 26일에 발행된 이전 규정에서는 지원 언어를 "교육청에서 분류한 뉴욕시 거주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어 외 주요 언어"로 정의했습니다.

- H. 언어 지원실(OLA) 및 관련 지원실은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감독하는 교육청 산하 기관을 의미합니다.
- I. 학부모는 학생 부모 또는 보호자, 또는 학생의 양육이나 보호를 책임진 기타 성인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생물학적 또는 입양 부모, 의부모, 법으로 정한 보호자, 위탁 부모 및 "부모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부모 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사망이나 투옥, 정신병, 다른 주에 거주, 또는 자녀 유기 등의 이유로 아동의 보호자 부재 시, 이 아동의 양육을 맡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 J. 학부모-응대 학교 직원이란 학교 슈퍼바이저, 학교 지원 직원(예: 서기직, 사무직 또는 기타 행정 직군), 학교 보건실 학교 기반 간호사, 커뮤니티 코디네이터 또는 보조 또는 직원, 패밀리 워커, 학교 카운슬러, 학교 사회복지사, 학교 심리학자, 교사 및 보조교사를 의미하며, 이들 모두는 LEP 학부모와 소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K. 학교는 뉴욕시 학교 학군 내 학교를 의미합니다.
- L. 번역은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서면 소통할 수 있도록 동등하게 서면으로 변환하여 원래 내용의 의미, 어조,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II. 선호하는 의사소통 언어 결정

- A. 학교는 학생이 학교에 등록한 이후 30(삼십)일 이내에 등록한 학생의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서면 및 구두 언어를 결정해야 합니다.
- B. 학교는 각 학부모가 선호하는 언어에 대해 적절한 가장 최근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이러한 정보는 학부모와 소통하는 학교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반드시 자동 학교 시스템(ATS) 데이터베이스, 학생 비상 연락처 카드, 학생 프로필, 학교 직원이 학생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온라인 지원서 또는 관련 데이터베이스, 문서 또는 지원서에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부모는 비상 연락처 카드 또는 이와 유사한 양식에 선호하는 언어를 업데이트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학교는 이러한 업데이트에 따라 ATS 또는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반드시 갱신해야 합니다.
- C. 학생 기록 사생활 보호 또는 법원 명령과 관련 뉴욕주 또는 연방 법에서 금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부모 선호 언어 정보를 학부모를 응대하는 직원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III. 언어 지원 서비스 제공 의무

- A. 중요한 의사소통을 지원 언어로 번역
 - a. 중요한 의사소통은 등록, 학업 표준, 프로그램, 학부모 초대 행사, 학교 휴교, 보건, 안전, 법률 및 징계 문제, 공립 교육을 받을 권리와 관련한 의사소통을 말합니다.

- i. 교육청은 학교(들) 또는 학급(들) 내 학생의 모든, 혹은 거의 모든 학부모에게 배부되거나 온라인으로 전달되는 중앙 부서 작성 양식, 학업 캘린더, 학부모 핸드북과 같은 비-학생 특정인 중요한 의사소통 내용을 분류하여 지원 언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최대한 가능하고 적절한 한도 내에서, 번역본은 영어 버전과 거의 같은 시기에 배부될 것입니다. 번역본이 동시에 제공되지 않는 경우, 교육청은 해당 문서가 계속 관련성이 있는 경우 요청에 따라 최대한 빠르게 번역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 ii. 학교 건물에서의 긴급 대피와 같은 학교가 해당 상황에 대한 의사소통을 동시에 전달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매우 긴박한 상황 시, 학교는 해당 긴급 상황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한 빨리 학부모가 선호하는 언어로 번역 또는 통역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 iii.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 섹션 504 계획 및 학생 평가 보고서와 같은 학생 특성의 서면으로 된 중요 의사소통의 경우, 교육청은 요청에 따라, 선호 언어가 지원 언어인 LEP 학부모에게 번역본을 제공해야 하며, 선호 언어가 지원 언어가 아닌 학부모에게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번역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 iv. 학교는 OLA에서 제공하지 않는 지원 언어로 학생 특성의 서면으로 된 중요 의사소통 내용의 번역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B. 통역

- a. 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뉴욕시/학군 회의에서 LEP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언어라고 교육청이 예상하는 지원 언어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i. 교육 정책 패널(Panel for Educational Policy) 회의
 - ii. 뉴욕시/학군 교육위원회 회의
 - iii. 교육청 중앙 부서에서 개최하는 뉴욕시 학부모 회의
 - iv. 학군 리더십 팀 회의 및 학군 사무실에서 개최하는 학부모 행사
- b. 교육청은 학부모 교사 컨퍼런스, 정학 심리, 특수 교육 회의, 영어학습학생을 대상 연례 학부모 교사 회의 및 섹션 504 회의 등을 포함하나, 이에만 국한되지 않는 여러 자녀 교육과 관련한 교육청 직원과의 중요한 의사소통에 통역 서비스를 요청하고 선호 언어가 지원 언어인 LEP 학부모에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c. 가능한 한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교육청은 지원 언어 이외에도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 d. 통역 서비스는 가능 여부에 따라 학부모가 소통하고자 하는 장소에서 대면으로 제공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제공될 수도 있으며, 또는 전화로도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 e. LEP 학부모는 통역 서비스를 위해 개인적으로 지인/동반인 또는 친척 등을 대동할 수 있습니다.
- f. 학생 및 기타 아동(18세 미만 미성년자)은 특수 교육 회의 또는 학생의 학업성취 및/또는 품행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그 어떤 비공식/공식 회의에서 교육청 직원 및 LEP 학부모 간 통역을 할 수 없습니다.

IV. 본 규정 요건 이상의 언어 지원 서비스

- A. 교육청은 오디오 또는 비디오로 소통하기 위해 스크립트 번역본을 지원 언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B. 교육청은 지원 언어가 아닌 언어를 포함하여 이 규정 요건 이상으로 번역 및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V. 학교 직원의 언어 지원 코디네이터 지명

- A. 매 학년도 시작 시, 각 학교장은 학교 내 언어 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언어 지원 코디네이터(LAC)를 최소 한 명 지정해야 합니다. LAC는 일반 학교 운영, 학부모 의사소통 전략 및 학교 직원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교감 또는 기타 학교 행정직원이어야 합니다. LAC의 책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a. 자원에 대한 정보와 이용 가능한 지원에 대한 업데이트를 다른 학교 직원들에게 전달.
 - b. 언어 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학부모의 질문과 우려 사항 지원.
 - c. 학부모와 소통하기 위한 학교의 의사소통 전략(서면 소통 및 학부모 행사)에 숙련되어야 함.
 - d. 학교 학부모들의 언어 요구 인지.
 - e. 종합 교육 계획(CEP) 내에서 학교의 언어 번역 및 통역(LTI) 계획 개발 시 지침 제공.
 - f. 학교 할당 규약(SAM)를 통해 매년 학교에 배포되는 번역 및 통역 서비스 자금의 활용 방법에 대한 지침 제공.
 - g. 언어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우려 인지 및 해당 우려에 대응하는 지원.
- B. LAC는 본 규정의 섹션 VII에 따라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VI. 학교 기반 언어 번역 및 통역(Language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LTI) 계획

- A. CEP의 일환으로 각 학교는 본 규정의 요건에 부합하는 언어 지원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연례 LTI 계획을 검토하고 완수해야 합니다. LTI는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 a. LAC 지정인 성명.
 - b. LEP 학부모 인구의 분류 및 평가.
 - c. 언어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학년도 동안 서면으로 된 중요 의사소통 및 대면 회의의 분류 및 학교가 해당 필요에 대응할 방법 계획.
 - d. 언어 지원 요건 및 이용 가능한 자원에 대해 직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e. 이용 가능한 언어 지원 서비스에 대해 학부모에게 공지.
 - f. 언어 지원 서비스 제공에 대한 피드백을 학교에서 요청하고 실행할 방법.
- B. 학교가 LTI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해당 계획은 CEP 검토 및 확정을 위해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교육청에서 검토합니다.

VII. 연수

- A. 본 규정에 명시된 정책 및 절차에 따라 모든 학교장은 학부모-응대 학교 직원이 OLA에서 개발한 언어 지원 훈련을 최소 2년에 한 번 지정된 기간 내에 받도록 해야 하며, 또한 학교 직원의 언어 지원 책임, 학교 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언어 지원 도움, 모범 사례 지침 및 윤리적 실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B. 또한, 교육청은 적어도 2년에 한 번 OLA에서 개발한 LAC 대상 보충 연수를 제공해야 합니다.

VIII. 학부모가 언어 지원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언어 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A. 학교의 학교장 또는 학부모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하십시오,
- B. 718-935-2013로 전화 또는
- C. [Schools.nyc.gov/hello](https://schools.nyc.gov/hello)에 방문하여 번역 및 통역 서비스 요청 양식 작성.

IX. 학부모 안내

- A. 교육청 웹사이트는 학부모의 언어 지원 서비스 권리와 해당 서비스 이용 및 피드백 제공 방법에 관한 정보를 각 지원 언어로 제공해야 합니다.

- B. 학교는 매년 각 학부모에게 본 규정의 조항에 따라 전자 또는 다른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무료 번역 및 통역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 a.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방법
 - b.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방법 및 문의 사항이나 불만 사항을 제출하는 방법.
- C. 학교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오피스에서는 매년 해당 학교나 오피스의 주요 입구 또는 그 근처에 눈에 띄게 지원 언어 및 해당 언어 지원 서비스 이용 가능에 대해 알려주는 포스터를 게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OLA는 학년도 초에 지원 언어로 번역된 포스터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포스터는 <https://infohub.nyced.org/nyc-doe-topics/office-of-language-access/translation-resources>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D. 학생 중 10% 이상의 학부모가 영어나 지원 언어가 아닌 선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의 학교는 이 섹션에 따라 OLA로부터 필수 자료를 번역본으로 받아 제공해야 하며, 또한 해당 자료를 게시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 E. 각 학교의 안전 계획은 언어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학부모들이 학교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통역 지원을 받아 제공해야 하며, LEP 학부모들이 학교의 행정 오피스를 찾아 담당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포함해야 합니다.

X. 기록 보유

- A. 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 a. 직원 또는 교육청 계약 업체가 번역한 별도의 문서 수와 해당 문서의 일반적인 내용.
 - b. 계약 업체를 통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의 및 전화 통화 수 및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언어.
 - c. 언어 지원 서비스에 대한 연간 예산에 관련한 문서.
 - d. 언어 접근 서비스를 제공하는 풀타임 교육청 직원의 수.

XI. 문의

본 규정에 대한 질문, 피드백, 불만 또는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음으로 연락하십시오:

언어 지원실(Office of Language Access)

NYC Department of Education

28-11 Queens Plaza North - 4th Floor

Long Island City, NY 11101

웹사이트 schools.nyc.gov/hello